

시간제등록생운영 규정

문서번호	BSKS-1-1-26
제정일자	2012.02.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2

2012.02.01.제정 2014.02.01.개정 2016.01.01.개정 2020.09.25.개정 2022.04.15.개정 소관부서 :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열린교육사회 및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을 위하여 부산경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53조 제4항에 의한 시간제 등록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시간제 등록생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한한다. 단, 본교나 다른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제3조(제출서류) ① 시간제 등록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등록원서
- 2.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 3. 기타 필요한 서류
- ②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4조(모집인원 및 선발방법) ① 모집정원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이내로 한다.
 - ② 전 항에 의거 매학기 모집인원 및 선발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교육과정) 교육과정 및 수강은 정규 학생과 통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이버 강좌 개설도 가능하다.)
- **제6조(이수학점)** ① 정규학생의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의 1/2까지 취득 가능하며, 학기별 최저 2학점, 최고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②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연간 24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 ③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80학점 이상이며, 교양·전공과목은 학과(전공)별 규정된 이수학 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7조(수강신청 및 등록)**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은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금을 납부한다.
- **제8조(등록금)** ① 정규학생의 당해 학기 계열별 등록금액에서 취득 기준 학점(20학점)으로 나 는 금액을 신청 학점수에 곱한 금액으로 한다.(사이버 강좌도 포함한다.)
 - ② 납입금의 반환은 등록금 반환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시간제등록생운영 규정

문서번호	BSKS-1-1-26
제정일자	2012.02.01.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2

제9조(학위수여)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45학점 이상인 자로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는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14.02.01.)에 의하여 『교무처』를 『교학처』 로 『산학처』를 『산학·취업처』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15.12.24.)에 의하여 『산학·취업처』를 『산학 처』로 명칭 변경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0.09.25.)에 의하여 『교학처』를 『교무처』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2.04.15.)에 의하여『학생산학취업처』를『산학처』로,『기획처』를『기획실』로,『입학홍보처』를『입시홍보실』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